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09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김승수·김위상·김예지

엄태영 · 성일종 · 안철수

이인선 · 김정재 · 박성훈

조승환 · 최보윤 · 권성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제50조(기본공제) ①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	
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2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	
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u>100만원</u> 이하인 사	<u>500만원</u>
람(총급여액 <u>500만원</u> 이하의	<u>800</u> 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	
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	3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으로	로서	해당	과서	기간의
소득금	- 애 현	합계액	0]	100만원
이하인	. 사람	남(총급	구여 액	<u>500만</u>
<u>원</u> 이	하의	근로:	소득민	· 있는
부양기	-족을	포함형	한다)	
가. ~	마.	(생 :	략)	
2.3	(생 :	략)		

<u>500</u> 만원
<u>800만원</u>
가. ~ 마.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